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2. 4.(수) 09:31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 욱 상임위원 (1인)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1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5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60-31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결주문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0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이 신청한 법인의 분할 변경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방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입니다. 신청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인분할 후 회사명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변경하고,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서울시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법인 분할 변경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분할 법인과 관련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독립적 지배구조, 재원 안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6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시청자 분야, 경제·경영·회계분야, 법률 분야, 기술 분야 각 1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와 필요 시에는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결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 심사점수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 심사 항목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20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0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20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 재정 능력 150점, 기술적 능력 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방안입니다. 심사위원간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별 총평 및 심사 사항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심사위원별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변경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2월 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2월 말에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 통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교통방송의 별도 법인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교통방송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지해서 봐야 할 것은 서울시로부터 분리를 하지만 재원 357억원이 교통방송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면 향후 구성될 이사들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독립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교통방송이 여야로부터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청서에는 광고를 하게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될 텐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제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광고를 하지 않던 개별사업자가 광고를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방송과 시청자 부문을 합해서 한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방송의 본질이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 관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또한 시청자 분야에서는 우리가 다른 심사 때도 별도의 심사위원을 인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을 6인에서 1명 더 늘리더라도 방송과 시청자 분야는 분리해서 한 사람씩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표 위원님께서 재정 독립을 주로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tbs의 독립법인화를 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 국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감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 바로 편향성입니다. “정치적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정보를 중점적으로 방송하게 되어 있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왜 뉴스를 하느냐, 논평이나 논조를 갖고 있는 그런 뉴스보도를 왜 하느냐,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다”라는 많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소속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임명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시정과 또 서울시장의 개인 치적방송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지적에 따라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심사도 독립법인화 신청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하게 조건에 맞는 것인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편향성을 또 보도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단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전문가, 또 시청자를 묶어서 한 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1명 더 늘리더라도 방송전문가가 들어가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tbs의 청취율이 굉장히 높는데 아침 출근길에 교통정보를 전한다는 구실로 해서 대단히 위험수위의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청취율도 대단히 높지만 각종 막말·오보·편파성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법인독립화 신청 심사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 한다, 걸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오보·막말·편파를 판단하는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허가 심사와 달리 변경허가 심사이고, 또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라서 심사위원도 약식으로 다른 것은 10명 가까이 하는데 줄여서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모니터링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실적을 재허가 심사나 방송평가 때 반영하는 구조라서,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재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변경허가 심사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법인분할 과정에서 그것이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느냐, 그것이 결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연계되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지, 방송 내용 자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독립법인화 심사는 재허가 심사와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설립할 때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법인화 출범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질타를 그대로 다 받아가면서 방송을 강행 하겠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년간 방심위 법정 제재를 모두 tbs가 14건이나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1건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종편의 경우 오보·막말·편파의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상 받으면 방송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왜 tbs는 적용이 안 되는지, 이것도 앞으로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또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tbs가 전원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일종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전하는 그런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시장의 개인 사유화 비슷한 방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은 이것이 지상파 FM입니다. 또 청취율이 대단히 높은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화로 방송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적책임·공익성·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 항목 배점을 보면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20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항목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과 나란히 다 200점씩입니다. 공적책임을 묻는 이런 항목은 250점 정도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요구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독립을 반드시 해야 하고 재정적 독립, 또는 방송내용의 독립 그리고 지상파 FM으로서 편파성을 절대 띠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심사위원단이 꾸려지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독립법인화 목적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사장이 서울시 교통방송본부장 개념으로 해서 고위공무원급 대우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이것이 독립법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충실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독립법인화 추진을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독립법인화나 방안을 내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점 문제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문제도 말 그대로 실현가능성이고 어떤 기구를 통해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송내용 심의 문제는 재허가 과정에서 방심위로부터 얼마나 법정제재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표 위원님께서 원안에서 방송·시청자 분야 합쳐서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1인으로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원안 중에 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측면 하나와 그리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1>번 항목의 배점을 250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접수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두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시 방송·시청자 분야 한 사람씩 나누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배점표로 보면 3개 항목에서 이미 6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점 만점에 600점이라면 상당히 높은 배점이고, 사실상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그리고 편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이 600점이 1,000점 중에서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600점 보다 높으면 다른 쪽 점수를 상대적으로 또 깎아야 하기 때문에 3개 항목에서 600점이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처럼 방송과 시청자를 또 나누어서 인원을 추가한다면 배점이 현재도 충분히 판단할 근거는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tbs를 독립법인화 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이나 또 그런 문제들을 우려했는데, 일부 방송에서 시청자위원회, 자체프로그램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법인화 하겠다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내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유명무실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물론 나중에 재허가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김석진 부위원장님의 그런 우려는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1명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배점을 다시 또 수정하는 것에는 이대호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국회 출석도 많으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에 힘이 많이 들어서 애를 먹었다는 것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합하면 400점이 되니까 공적 책임·공정성 분야에 200점을 그대로 뒀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아까 법정제재 건수도 확인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법정제재 건수와 전체 제재건수를 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회의록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tbs 14건이 법정제재라고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14건이 맞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 14건에는 법정제재와 다른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배점은 이것이 초안에는 점수가 낮았는데 더 강화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600점 정도가 여기에 비중이 실려 있으니 그대로 가자고 하셨으니 저는 다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명 강화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셔서 정해 주신 대로 저도 따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특별히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해야 합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 고치는 것은...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방송과 따로 1명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 한상혁 위원장

- 의안 중 <별첨>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기본계획(안) 중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방송·시청자 분야 1인’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방송 분야 1인, 시청자 분야 1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자금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말기 유통조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자급제 단말기의 유통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우회적인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자급제 단말기를 공급·판매·이용하는 과정 중에 이용자 차별 등의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관련 법령이 미비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19년 9월 현재 국내 자급제 단말기 이용 대수는 약 360만대에 달합니다. 두 번째, 경과입니다.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운영했고, 10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준수사항으로 첫 번째,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단말기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공급을 거절·중단하거나 그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말기 제조사가 서비스 연동규격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상 구현함에 있어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급제 단말기 판매 단계 해당입니다.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는 특정 이동통신사가 가입 조건과 연계하여 추가 할인 등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 조건 등과 함께 영업장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가 기만적인 가격표시나 과대·과장·오인 광고나 설명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급제 단말기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처리 단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이동통신사가 자급제 단말기의 약정개통 및 서비스 선택·유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조건을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와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가입 절차나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와 차별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말기 AS나 분실·파손 보험 가입단계의 해당 사항입니다. 제조사가 AS를 제공하거나 이통사가 단말기 보험을 제공하는 조건에 있어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이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복수의 단말기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부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가이드라인의 이행·조정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매 2년마다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안)을 첨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 가이드라인은 진즉에 빨리 나왔어야 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성안하는데 사무처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사업자들 의견수렴은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사업자 의견에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이통사나 제조사 각각 자기가 유통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점보다 상대방, 특히 이통사의 경우는 제조사가 공급하는 단계에서 차별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제조사도 이통사에서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정리하면 제조사의 의견, 이통사의 의견을 다 반영했고, 이통사는 제조사의 공급 거절, 연동 규격 문제 그런 것들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서 그 내용들을 주로 <1>, <2> 번에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통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를 차별한다거나 이용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3>번에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조사의 걱정, 이통사의 걱정을 다 반영했고, 결국은 걱정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는 이용자가 이용할 때 불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 반영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일선 판매점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판매점에서는 자급제 단말기 판매는 과점 매장이나 다른 양판점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고, 유통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직접 그런 것에 대한 판매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먼저 단말기를 구입하고 나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대리점이나 유통판매점에 와서 가입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들 이통사가 판매한 단말기에 비해 조금 적게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기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일반판매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규제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판매점에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는 분위기일 텐데, 어쨌든 이것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선 판매점에서 잘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잘 모니터링해서 법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앞으로는 더 감안해서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뒤늦게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

입니다. 시장을 잘 관찰해서 법적으로 미비점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먼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법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법제도 개선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자급제 단말기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협조,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조사, 이동사, 그리고 판매점 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급제 단말기 서비스 가입시 업무처리 거부, 지연 금지가 있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핑퐁을 치거나 또 미루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질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면 아마 상습적으로 아니면 상당 부분에 집중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구체화시키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 이런 부분은 바로 정정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지금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나오는 이런 소비자 차별행위라는 것들이 아직 현장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더욱 규정 자체를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원래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안건에 올라와 있는 대로 협의체를 반드시 운영하고 그다음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안에는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안건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를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라고 해 놓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기관에서 쓰는 용어,

법조계에서 쓰는 어려운 용어는 전부 다 쉽게 바꾸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쉬운 용어로 바뀌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 또는 '비자급제 단말기'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석진 부위원장**

- 바꾸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용어를 우리 어법에 맞게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이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용어정리는 그렇게 하시지요.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고민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김창룡 위원님 말씀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을 구체화 시켜서 변경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해석할 때 그렇게 하지는 취지의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조금 변경해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화시키게 되면 사업자들에게 이것이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적용에 곤란한 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그래서 과장이 답변한 대로 아직은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면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완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한상혁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대로 두되,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도 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9분 폐회 】